

##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|          |      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<br>번호 | 20342 |
|----------|-------|

발의연월일 : 2026. 7. 31.

발 의 자 : 윤준병 · 손 술 · 박희승  
안태준 · 허종식 · 朴芝源  
서영석 · 전종덕 · 이춘석  
주철현 · 박 정 의원  
(11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라 시·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동물의 구조·보호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고,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이 적정하게 사육·관리될 수 있도록 동물원 또는 민간단체 및 개인 등에 기증 또는 분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현재 많은 동물보호센터가 수용 공간의 한계와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동물들을 장기 보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, 이로 인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불가피하게 안락사 등 인도적 처리를 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지속되고 있음.

또한 동물의 입양을 희망하는 이들의 입장에서조차 동물들이 동물보호센터의 낯설고 격리된 환경에서 보이는 위축된 모습만으로는 동물의 실제 성격이나 행동 특성을 파악하기 어려워 입양 후 가정 환경에

적응하지 못해 다시 파양되거나 유기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일반 가정에서 일정 기간 동물을 임시로 돌본 후 입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‘동물보호센터 임시보호제도’를 도입하여 동물에게는 가정 내 보호를 통해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을 회복할 기회를 제공하고, 보호센터에는 수용 공간 부족 문제를 완화하며, 예비 입양자에게는 양육 환경의 적합성을 미리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충동적 입양에 따른 파양을 막고 책임감 있는 반려 문화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45조 등).

##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5조제3항제4호 중 “분양”을 “분양 및 임시 보호 관리”로 한다.

제45조의 제목 중 “분양”을 “분양 및 임시 보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기증하거나 분양할”을 “기증·분양하거나 임시로 보호하게 할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기증하거나 분양하는”을 “기증·분양하거나 임시로 보호하게 하는”으로, “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”를 “기증·분양하거나 임시로 보호하게 하여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“기증·분양”을 “기증·분양 및 임시 보호”로 한다.

다만, 동물을 임시로 보호하는 자가 해당 동물의 분양을 희망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우선하여 분양할 수 있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동물을 임시로 보호하는 자에게 임시 보호 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접종 및 치료 등을 지원하거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       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        정        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35조(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등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35조(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등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① · ② (생    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동물<br>보호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<br>와 같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③ -----<br>-----<br>-----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. ~ 3. (생    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. ~ 3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. 제45조에 따른 동물의 기증<br>· <u>분양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. -----<br>-- <u>분양 및 임시 보호 관리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5. ~ 9. (생    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. ~ 9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④ ~ ⑦ (생    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④ ~ ⑦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45조(동물의 기증 · <u>분양</u> ) ① 시<br>· 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<br>장은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<br>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이 적<br>정하게 사육 · 관리될 수 있도<br>록 시 ·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<br>에 따라 동물원, 동물을 애호하<br>는 자(시 · 도의 조례로 정하는<br>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하<br>다)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<br>간단체 등에 <u>기증하거나 분양</u><br><u>할 수 있다.</u> | 제45조(동물의 기증 · <u>분양 및 임<br/>시 보호</u> ) ① 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 <u>기증 · 분양하거나</u><br><u>임시로 보호하게 할</u> -----. |
| ② 시 · 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 ----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인 경우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한 후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.

③ 시·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분양될 수 있도록 공고할 수 있다. <단서 신설>

<신 설>

④ 제1항에 따른 기증·분양의 요건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의 조례로 정

-----기증·분양하거나 임시로 보호하게 하는-----

-----기증·분양하거나 임시로 보호하게 하여야-----.

③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--. 다만, 동물을 임시로 보호하는 자가 해당 동물의 분양을 희망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우선하여 분양할 수 있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동물을 임시로 보호하는 자에게 임시 보호 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접종 및 치료 등을 지원하거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⑤ -----기증·분양 및 임시 보호-----  
-----

한다.

---.